

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[시행 2022.01.01]
(일부개정) 2021.12.14 조례 제129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정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3-810-528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4.18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7.04.18, 2021.12.14.>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. <개정 2013.11.06, 2017.04.18, 2021.12.14.>

제4조(예우 및 지원사업) 경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4.18.>

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<개정 2013.11.06, 2017.04.18, 2017.12.28, 2019.09.26.>
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<개정 2017.04.18, 2021.12.14.>
3.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<신설 2021.12.14.>
4.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급신청 및 방법) ①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4.18, 2021.12.14.>

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14.>

③ 수당은 매분기 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 <개정 2017.04.18.>

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<개정 2017.04.18.>

⑤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4.18, 2021.12.14.>

⑥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,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(葬祭)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4.18.>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된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7.04.18.>

제7조(지급중지 및 환수) <개정 2017.04.18.>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지급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4.18.>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4.12.22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04.18.>

부칙 <2011. 10. 19. 조례 제762호>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1. 06. 조례 제852호>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12. 22. 조례 제88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. 1.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「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와 조례 제636호「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1> ~ <7> 생략

⑧ 「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「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」”를 “「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<9> ~ <19>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」, 「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 「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」, 「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5.11.27. 조례 제93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04.18. 조례 제1005호>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12.28. 조례 제1058호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09.26. 조례 제1164호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2.14. 조례 제129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망위로금에 대한 적용례)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